

개요

1. 목적

- 공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, 전송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거부·설명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등 요구”라 한다)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·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.

2. 기본 원칙

-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등의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.
-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3. 관련 근거

- 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법 제35조의2(개인정보의 전송 요구)
- 법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
- 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, 법 제37조의2(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)
- 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
- 법 시행령 제41조(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), 제42조(개인정보 열람의 제한·연기 및 거절)
-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-5호)

4. 적용 시점

-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
-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

II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

1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

-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-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
 - ② 개인영상정보(CCTV) 열람 요구
 - ③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 -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 - 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

2. 개인정보 열람 요구

- KOTRA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-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[참고 1]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

제34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.
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.

3. 개인영상정보(CCTV) 열람 요구

- 정보주체는 KOTRA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합니다.
-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등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

[참고 2]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(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)

제44조(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)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"열람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
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

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2.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3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
4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6.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

4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
- KOTRA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KOTRA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·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KOTRA는 개인정보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·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[참고 2]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

제32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·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정보주체의 정정·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5.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요구

- KOTRA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제2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-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-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KOTRA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KOTRA는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·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[참고 3]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3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)

제33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)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6. 권리행사 방법

○ 위 항목에 따른 권리행사는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개인정보보호 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KOTRA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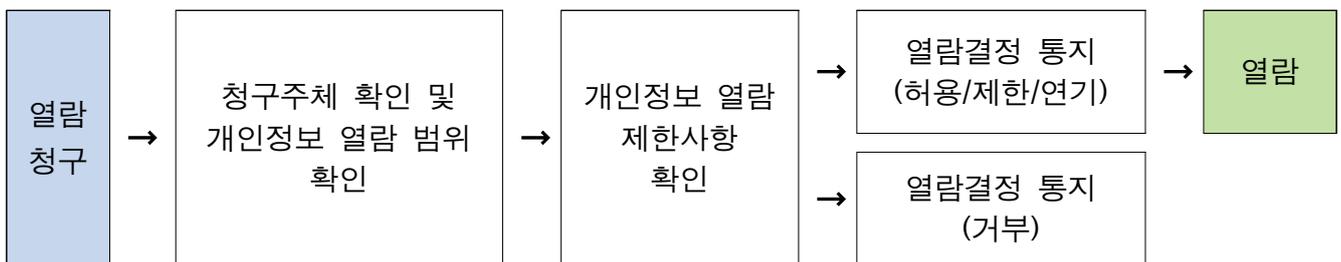
①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 : [붙임1] 참조

② 위임장 : [붙임6] 참조

7. 권리행사 절차

가. 열람청구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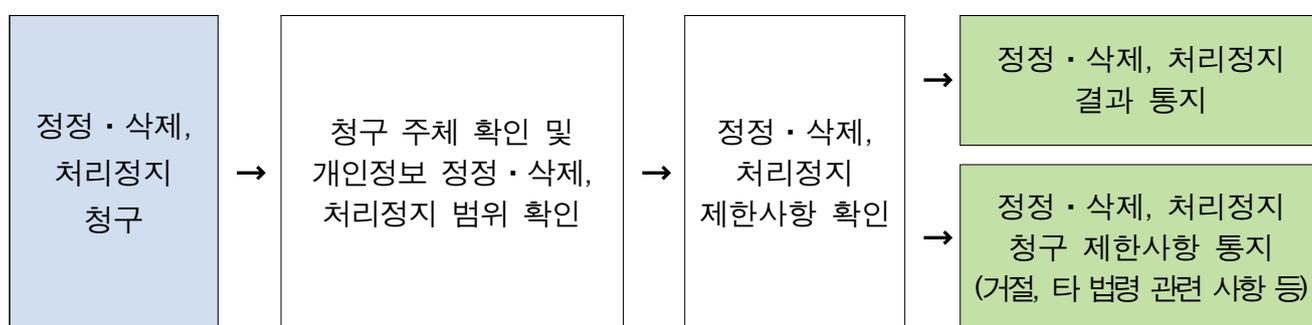
-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[붙임1]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, KOTRA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·시간 및 장소 등을 [붙임2]와 같이 열람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.
- 다만,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열람청구 절차



나.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 절차

-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-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등 조치 사실 또는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, 이의제기 방법을 [붙임3]와 같이 결과 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.
-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조치한 경우에는 조치한 사실을,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[붙임3]와 같이 결과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
-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 절차



- 이 하 여 백 -

III | 이의 제기(불복 청구)

1. 이의 제기 방법

- 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주체는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-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·연기 및 거절,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, 처리정지, 수집 출처 요구 등에 대해 거절 조치한 것에 대하여 [붙임4]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
- KOTRA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[붙임5]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정보주체는 KOTRA로부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후,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공사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-행정심판안내) 홈페이지 참조

2. 이의 제기 절차



3. 개인정보 고충사항을 접수·처리하는 부서

-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는 KOTRA 대표 홈페이지(www.kotra.or.kr)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	부서명	성명	연락처
개인정보 보호책임자	디지털무역투자본부	이정훈 본부장	02-3460-7400
개인정보 보호관리자	정보화혁신실	빈준화 실장	02-3460-7094
개인정보 보호담당자	정보보안운영팀	고유정 대리	02-3460-7185 (koyu@kotra.or.kr)
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	고객가치실	이성기 실장	02-3460-7310
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	고객전략팀	정지운 과장	02-3460-7329 (jiunj@kotra.or.kr)

[붙임 1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
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 이내
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정보주체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
	주 소	

대리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	

요구내용	<p>[]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</p> <p>[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목적</p> <p>[]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</p> <p>[]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</p> <p>[]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</p>
-------------	--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요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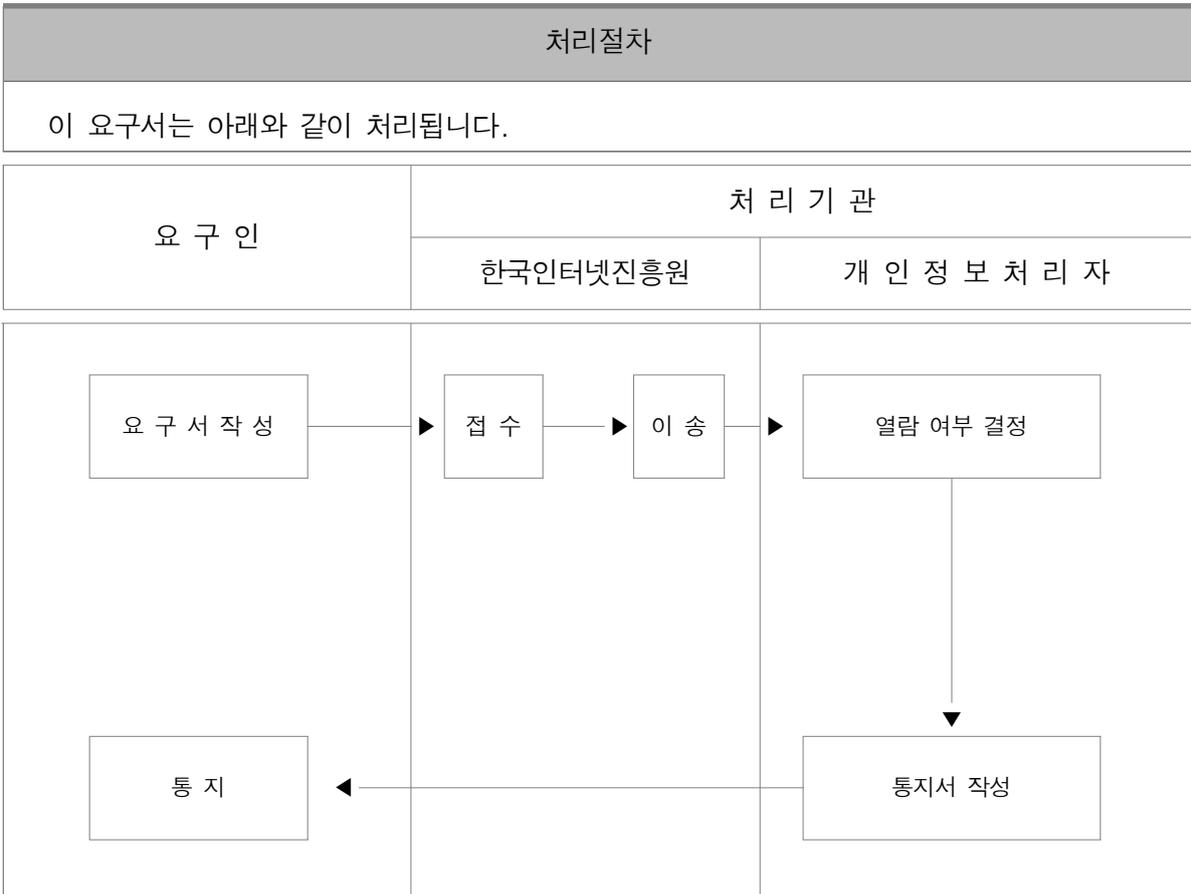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하

작성 방법

1. '대리인' 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
2. '요구내용'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[√]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

[붙임 2] 개인정보(열람, 일부열람, 열람연기, 열람거절) 통지서

개인정보 (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) 통지서

(앞 쪽)
)

수신자 (우편번호: , 주소:

요구 내용			
열람 일시			열람 장소
통지 내용 (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연기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거절)			
열람 형태 및 방법	열람 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·시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·출력물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파일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제물·인화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	열람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납부 금액	①수수료	②우송료	계(①+②)
			원 원 원
	수수료 산정 명세		
사 유			
이의제기 방법	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방법을 적습니다.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인

유의사항

1.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가.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: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나.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.
 - 가.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인지
 - 나.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증지
 - 다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

※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.
3. 열람제한,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 3] 개인정보 (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개인정보 ([] 정정·삭제, []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수신자 (우편번호: , 주소:)

요구 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정·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정지 조치 내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정정·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처리정지 결정 사유	
이의제기 방법	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 방법을 기재합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인

유의사항

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'이의제기방법'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신문용지 54g/㎡]

[붙임 4] 이의제기 신청서

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 이내
정보주체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
	주 소	
대리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 소	
거절통지 수령일자		
이의신청 사항	[]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제한·연기 및 거절 []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에 대한 거절 []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[] 개인정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·출처 요구에 대한 거절 [] 기타()	
이의신청 사유	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.

년 월 일

요구인

(서명 또는 인)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하

작성방법

1. '대리인'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.
2. '이의신청 사항'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[√]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
[붙임 5]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

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	
수신자	(우편번호: , 주소:)
이의신청 내용	
이의신청 판정결과	
판정사유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 제5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 년 월 일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인

유의사항

본 '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' 수신 후,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[붙임 6] 위임장

위 임 장

위임받는 자	성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	정보주체와의 관계
	주소	
위임자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	
	주소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

(서명 또는 인)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하

※유의사항

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(수임인)는 본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수임인의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인쇄용지(특급) 34g/㎡]

